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674 제안연월일: 2023. 4.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지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김성	박완수의원	2020.11.17.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1.4.20.), 제400회 국회(정기회)
	신정훈의원	2020.12.14.	조 위 원 외 (21.4.20.7), 제 400 외 국 외 (87) 외 제 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9.21.)·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11.23.), 제 403호 국회(임시회) 제 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2.21.) 상정
	이상민의원	2021.3.4.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1.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11.23.),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2.21.) 상정
	김성원의원 (2111823)	2021.7.29.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2.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9.21.)·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11.23.),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2.21.) 상정

	김병기의원	2022.8.24.	2022.8.24.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2.1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11.23.),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2.21.) 상정 2022.8.12.
	민병덕의원	2022.9.15.	
	박영순의원	2022.9.27.	
	이동주의원	2022.8.12.	
	이수진(李 秀眞)의원	2022.9.15.	
	김성원의원 (2117472)	2022.9.22.	
	김정재의원	2022.10.4.	
	이성만의원	2022.11.14.	
	전봉민의원	2022.11.2.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2.1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2.11.23.),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2.21.) 상정
	이만희의원	2022.11.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2.11.14.)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2.11.23.),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2.21.) 상정
	이수진(李 壽珍)의원	2022.11.25.	직접 회부(2023.2.20.)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
	김병욱(金 炳旭)의원 (2119028)	2022.12.20.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3.2.21.)는 위 1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3.2.24.)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또한,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재난의 예측 및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최소화하는"을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응·복구하기"를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다.

제66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74조의3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개인위치정보의"를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로, "제3항"을 "제3항 및 제8항"으로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 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그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제7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 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데이터 제공의 대상·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 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재난이 발생하 여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제2조(기본이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u>최소화하는</u> 것이 국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	
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	
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
	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
	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
	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
	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u>대</u>
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

제4소(국가 능의 잭무) ①
<u>ਪ</u> ੍ਰੀ
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3
,

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 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9. (생략)

④ ~ ⑦ (생 략)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⑥ (생 략)

⑦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 대상·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
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
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7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 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과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 대상·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 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 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 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개인위치정보 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제3항 및 제8항-----

>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 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

- 의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 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 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재난안전데이터통 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데이터 제공의 대상·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